



중앙방역대책본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0-1판 개정 안내

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관련 귀 기관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2.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」 제10-1판을 송부하오니, 업무 시 적극 활용하여 감염예방 및 전파차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**업무 분장표 및 지침 관련 실무 연락처**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의 해당 지침 게시판에 별도로 첨부할 예정이며, **별도 서식**은 한글(HWP) 양식으로 추가 첨부하오니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업무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

<주요 개정 사항>

- 업무 원활화를 위한 신설 및 개정 사항
 - 역학조사 관련 서식, 부록 등 외국인 관련 대응 사항 개선*
 - * 서식 3-6, 23. 17개국 번역본 : 영어, 프랑스어, 중국어, 일본어, 러시아어, 아랍어, 베트남어, 우즈베크어, 인도네시아어, 네팔어, 라오어, 몽골어, 캄보디아어, 태국어, 필리핀어, 스리랑카어, 미얀마어
 - ** 별도 서식 : (서식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0-1판
 - * 부록 24. 외국인 통역지원 콜센터 언어별 직통번호
 - * 부록 25. 외국인 확진환자용 기초/심층역학조사서 작성 원칙
 - 확진자 접촉자의 격리기간 중 지자체 판단에 따라 최종 접촉일로부터 7~8일째 추가 검사 가능하도록 안내
 - 재검출 사례 관련 Q&A 추가
 - 코로나19 사망자 발생시 제출자료 명시
- 기시행 중인 제도 변경사항 반영
 -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국내 코로나19 무료검사 대상 현행화
 - 진단검사비 청구방식 변경에 따른 업무 흐름도 반영
 - 응급선별검사 적용 대상 관련 건강보험 급여범위 현행화
 - 자가격리 기간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무단 외출 금지
 - 행정기본법 시행*에 따른 격리기간 안내 문구 수정
 - * 보건소 격리기간 안내 업무 변동 없음
 - 확진환자 및 접촉자 조사 시 동선 파악을 위한 보조 수단의 범위 확대
 - 코로나19 재검출·재감염 사례의 관리에 대한 개정 사항 반영
 - 변이바이러스 환자관리 관련 세부지침 안내 및 주요 대응 요약 현행화

※ 시행일: 2021.08.30.

- 붙임 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0-1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.
2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0-1판 1부.
3. (서식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0-1판 1부. 끝.

중앙방역대책본부장

수신자 모든 기관, 시도, 시군구, 학협회

역학조사관 **송영준** 보건연구관 **연가** 팀장 **곽진** 전결 2021.8.27.
협조자
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-17901 접수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질병관리청 중 / <http://www.kdca.go.kr>
양방역대책본부
전화번호 043-719-9329 팩스번호 043-719-9149 / syface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질병정보 공금할때,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